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월 21일,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1.2.1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
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3.) 상정 · 축조심사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3.23.) 상정 · 축조심사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5.24.) 상정 · 축조심사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6.29.) 상정 · 축조심사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1.)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2021.12.2.)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 ·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도입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함.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 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비용추계서

없 음

12. 기타 사항

없 음